제주문화예술재단

631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
Tel. 064.800.9152~7 Fax.064.800.9119

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만족센터
1577-8751

e나라도움 콜센터
1670-9595

2018년도

제주문화예술 지원사업 신청안내

- 제주문화예술재단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(약칭: 청탁금지법)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.
-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관계자(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)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심의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 해당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

JFAC 제주문화예술재단 Jeju Foundation for Arts & Culture

2018년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 주요 개편내용

지원사업 유형 개편

- 지원사업 유형의 단순화
- 예술인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개편

지원자격 완화

- 휴식년제 폐지(개인 2년)
- 연례, 정기사업 계속 지원

예술계 현장의견을 수렴한 지원사업 신규 발굴 등

- 최초예술지원, 신생 공연예술단체(공간) 지원사업 신설
- 청년예술지원사업, 원로예술가지원사업 확대

심의위원 공개 추천제 도입을 통한 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

- 예술계 현장으로부터 심사위원 적격인사 추천받는 등 심의위원 후보군 구성
- 심의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 반영

지원금 분할 교부 폐지

- 1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 지원사업, 창작집 발간 사업에 대한 분할 교부 폐지
  (단,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2회 분할 지급)

자부담 의무비율 제도 폐지

- 예술인/ 예술단체에 대한 자부담 의무비율 제도 폐지

지원금 집행 대상항목 완화

- 지원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금 집행 대상 항목 완화
- 보조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면 인적 경비나 지원금 집행 가능

목차

4 **2018년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한 눈에 보기**

5 **지원사업 공모일정**

6 **지원신청 공통사항**

9 **2018년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사업별 상세 안내**

【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】

10 1. 전문예술창작지원

10 1) 문학분야

13 2) 시각예술 분야

16 3) 공연예술 분야

19 4) 다원예술 분야

22 2. 최초예술지원

24 3. 원로예술가지원

26 4. 문화예술연구 및 평론지원

28 5. 국제예술교류지원

30 6.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

32 7. 대안문화공간지원

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】

34 8.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

지원사업 한 눈에 보기

구분	지원사업 유형명	지원신청 분야				지원자격			비고
		문학	시각	공연	다원예술	개인	단체[1]		
							직능예술단체	소그룹집단	
1차 공모	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			●				●	
	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	●	●	●	●			●	
	문화예술연구 및 평론 지원		●	●		●	●	●	중복
	국제예술교류지원	●	●	●	●	●	●	●	중복
	전문예술창작지원 B형 (창작 기획 지원)	●	●	●	●	●		●	5년간 1회 지원
2차 공모	전문예술창작지원 A형 (연례, 정기지원)	●	●	●	●	●	●	●	
	최초예술지원	●	●	●	●	●			
3차 공모	원로예술가지원	●	●	●	●	●			
	대안문화공간지원	●	●						지원자격 : 공간
	신생 공연예술단체 및 공간 지원			●				●	별도공모
	이주예술인-지역예술인 이음사업	●	●	●	●	●	●	●	〃

※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과 전문예술창작지원은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. 단, 문화예술연구 및 평론 지원, 국제예술교류 지원은 중복 지원합니다.

※ 청년문화예술지원사업은 추후 별도 공모 예정입니다.

1) 전문예술단체는 소그룹진답과 직능예술단체로 구분됨.
① 직능예술단체 : 각 장르별 대표적인 주요 단체나 협회 또는 전국적 규모의 장르별 대표 단체나 협회를 말함.
② 소그룹집단 : 소규모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전문예술단체로 직능예술단체에 속하지 않는 창작활동 그룹을 말함.

지원사업 공모일정

구분	1차 공모	2차 공모	3차 공모
대상사업	•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• 전문예술창작지원 (B형: 창작기획사업) •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• 국제예술교류지원 • 문화예술연구 및 평론 지원	• 전문예술창작지원 (A형: 연례/정기사업) • 최초예술지원	• 원로예술가지원 • 대안문화공간지원 • 신생공연예술단체 및 공간 지원(별도 공모) • 이주예술인-지역예술인 이음사업(별도 공모)
신청공고일	2018.01.04.(목)	2018.01.04.(목)	3월중 예정
사업설명회	2018.01.04.(목)~01.05.(금)	2018.01.04.(목)~01.05.(금)	3월중 예정
신청접수	2018.01.08.(월) ~ 01.29.(월) 18:00	2018.02.05.(월) ~ 02.26.(월) 18:00	3월중 예정
결과발표	2월 중	3월 중	3월 중

지원신청 공통사항

지원대상 사업기간

-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

지원신청서 제출방법
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http://www.ncas.or.kr)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

지원신청자격

-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(단,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 신청 제한)
  - 개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, 지원신청이 가능
  - 단체는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록증,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
-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
- 문화예술시설 운영자
-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등(사업별 규정)

지원신청 부적격자

-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-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
- 국립·공립(도·시·군립)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
-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
- 초·중·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
- 학교,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
-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·개인. 단,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,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.
-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·개인. 단, 재단의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

  ※ 기존 지원사업이 해당 사업연도 내에 종료되지 않은 경우, 다음 년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더라도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
- 보조금 관계 법령 및 「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」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·개인
- 재단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·개인
- 「예술인복지법」 제6조의2(금지행위 등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·개인

-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 등 공공연하게 표절시비가 있는 단체·개인

지원신청 부적격 사업

-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지원되는 사업
-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
- 시설의 건립 및 매입, 재건축 사업
-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
-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
-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
- 영화진흥위원회, 한국콘텐츠진흥원,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(영화, 영상, 문화산업, 번역 출판 분야 등)의 대상 사업

※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로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조

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

- 지원심의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모든 심의 평가항목에 최하 등급을 부여하여 탈락 처리됩니다.
- 지원심의 및 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,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합니다.

지원신청 제한

- 동일 신청인·단체가 당해 연도에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동일 유형의 사업에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**동일 신청인·단체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1개 사업만 지원합니다.**
- 단, 다음의 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.
  - 문화예술연구 및 평론 지원사업
  -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
- **동일사업에 대해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, 산하기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(선정 후라도 지원결정을 취소).**
- **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선택과 집중 지원사업 유형(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)은 타 지원사업 유형과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.**
- **지역예술인 보호 및 지원 정책 강화에 의해 공고일 기준 제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전문예술인(단체)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**
- **선정자는 최종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신청자격 증빙자료를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.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자격 미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.**

구분	제출서류
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증빙서류	주민등록등초본(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)

지원규모 및 지원항목

- 지원규모는 공모사업의 유형·성격·규모를 고려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**일부 지원을 원칙**으로 합니다.
-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**직접 경비**만 지원합니다(단, 일부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 가능).

사업평가 결과의 차기 지원심의 환류 확대

- 지원 결정된 개별 지원사업에 대하여 현장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를 시행합니다.
- 사업목적과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지표 마련 및 성과 관리를 통해 2018년도 지원사업 실적을 충실히 평가하고, 그 결과를 2019년도 지원심의에 본격적으로 환류 할 계획입니다.

우대사항

- 정책상 전업작가, 장애인,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법정 차상위계층)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합니다.

유의사항

- 지원사업 관련 규정 사전 숙지 및 준수
  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관련 규정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합니다. 지원신청자의 신청서 제출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  - 지원신청자는 반드시 지원사업별 지원신청자격, 지원대상사업, 지원신청서 제출방법 등 세부내용 확인 후 지원신청 바랍니다.
- 지원신청 마감 당일은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니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신청서 작성시 사업목적 및 기획의도, 세부사업내용은 심의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니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(예시)

시각예술	전시명, 전시주제 전시기간, 전시장소, 전시작품 종류 및 출품수, 출품작품 규격, 출품작품 재료, 출품작품 판매여부, 전시구성 및 연출방안 등
문학(행사), 공연/다원예술	행사·공연명, 일시, 장소, 프로그램 소개, 소요시간, 주최/주관, 후원/협찬, 참여예술인 수

- 선정된 사업수행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과 크게 변경될 경우, 지원금 취소, 삭감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. 지원신청서는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- 각 사업별 필수서류 제출 누락시 지원심의 대상에 제외됩니다.
- 지원신청서에 개인 및 단체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,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,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지원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심의 배제사항에 해당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신청시 자부담을 조건으로 신청하여 심사 확정되면 지원예정액에 비례하여 유지하여야 합니다.
-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단체에 없는 경우 지원신청 당시 원작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
2018년도

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

사업별 상세 안내

1. 전문예술창작지원

1) 문학 분야

지원내용

- 문학 작품 창작 및 발간 지원
- 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획행사 등 지원

※ 위의 2가지 중 1가지 유형의 사업만 신청할 수도 있고, 2가지 모두 포함하여 신청할 수도 있음.
(직능예술단체에 한함)

신청자격

- 최근 3년간(2015~2017년)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(거주) 예술인 (공고일 기준)
  - 개인 창작집 발간 1회 또는 문예지/ 전문지/ 동인지 등 본인의 작품이 3회 이상 실린 실적
- 최근 3년간(2015~2017년)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 전문예술단체

※ 공통사항 : 상업성이 없는 비영리 순수 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

지원항목

- 비영리 문학단체가 국내에서 발간하는 문예지의 원고료 및 인쇄출판비 지원
- 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 추진 시 직접 경비 지원

지원유형

- 전문예술창작지원 **A형** : 연례, 정기적인 사업으로 소액다건형 지원/ 매년 지원
- 전문예술창작지원 **B형** : 창작 기획 사업으로 집중지원(선택과 집중)/ 5년간 1회 지원

지원대상사업

- 2018.12.31.까지 창작집 발간, 문학행사 등 사업 완료가 가능한 사업
  - 창작집 발간은 출간물 형태로 한정
  - 미발간 원고로 구성된 개인 창작집만 인정(기 발간 원고 수록 불가)

지원유형 및 지원금 범위

구분			세부분야	지원금 범위
A형	개인		시, 시조, 소설, 희곡, 수필, 동시, 동화, 평론, 기타	300만원~500만원
	단체	소그룹 집단	시, 시조, 소설, 희곡, 수필, 동시, 동화, 평론, 문예지, 동인지, 행사, 기타	400만원~700만원
		직능단체		1,000만원~2,000만원
B형	개인		시, 시조, 소설, 희곡, 수필, 동시, 동화, 평론, 기타	500만원~1,000만원
	단체	소그룹 집단	시, 시조, 소설, 희곡, 수필, 동시, 동화, 평론, 문예지, 동인지, 행사, 기타	1,000만원~2,000만원

1. 전문예술창작지원

1) 문학 분야

심의절차

1차 행정심의		**2차** 서류심의		**3차** 심층심의
재단		전문가		전문가
• 신청자격 확인 • 전년도 사업평가		•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심사		• 심의기준에 따른 토론심사
A형(연례, 정기사업)	▶	**A형**(연례, 정기사업)	▶	**A형**(연례, 정기사업)
B형(창작기획사업)	▶	**B형**(창작기획사업)	▶	**B형**(창작기획사업)

심의기준

- 집필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(20%)
- 원고의 우수성 및 완성도(30%)
- 작가의 수행역량(30%)
- 성과와 기여도(20%)

제출서류

구분		제출서류 내용
개인	필수	① 지원신청서 (국가문화예술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) ② 최근 3년간 문화예술 활동 경력 증빙 자료 (HWP, PDF, PPT 파일 형식으로 하나의 파일로 제출) ③ 작품 원고(별도의 양식에 hwp 한글파일 원고 삽입하여 제출) - 창작집 내 수록 예정인 무기명 원고 - 원고 내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이름, 기호, 색상, 특정제목 등 포함 불가 - 미 발간된 개인창작품(발표작과 미 발표작 구분 없음)
		※ ②~③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작성 시 첨부(총 용량 100MB 이하), 별도 제출 불가
단체	필수	① 지원신청서 (국가문화예술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) ② 최근 3년간 신청단체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 경력 증빙 자료 - 언론, 전문지 등의 보도내용, 행사 사진 자료 등 (HWP, PDF, PPT 파일 형식으로 하나의 파일로 제출) ③ 단체 성격을 알 수 있는 각종 법적증빙서 ④ 단체에서 발간한 문예지(기관지) - 2015~2017년도에 발행한 해당 문예지(기관지) 중 기획과 내용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1호를 선택하여 3권 제출(우편 제출)

1. 전문예술창작지원

1) 문학 분야

(장르별 제출원고 편수)

구분	제출편수	작품당 분량
시, 시조, 동시	10편	분량제한 없음.
소설	• 단편 : 2편 • 중편/ 장편 : 1편	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200자 원고지 300매 내외
동화	• 단편 : 2편 • 중편/ 장편 : 1편	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200자 원고지 300매 내외
희곡	3편	200자 원고지 200매 내외
평론	3편	분량제한 없음.
수필	3편	분량제한 없음.

※ 제출원고 편수를 지키지 않을 경우, 심사대상에서 제외함.

신청서 제출방법

- 신청기간 A형 : 2018년 2월 5일(월) ~ 2018년 2월 26일(월) 18:00
  B형 : 2018년 1월 8일(월) ~ 2018년 1월 29일(월) 18:00
-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지원 신청
  - 전자 우편,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.
 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에 단체 명의로 회원가입 후,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.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.
 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'내정보방'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도 심의대상이므로 업데이트를 하여야 한다.

의무사항

- 선정된 예술인/ 예술단체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'제주인놀다'에 반드시 지원사업 홍보물을 게시하여야 합니다. (문학행사 : 교부 신청전/ 발간 : 발간 후)
- 선정사업 관련 홍보물 및 발간물에는 반드시 '문화체육관광부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'의 후원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.
- 선정된 예술인/ 예술단체는 추후 사업 수행시 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, 관객만족도조사,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※ 의무사항 미이행시, 추후 재단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- 예술창작팀 064-800-9152~7

1. 전문예술창작지원

2) 시각예술 분야

지원내용

- 시각예술분야 창작·발표 지원

신청자격

- 최근 3년간(2015~2017년)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(거주) 예술인 (공고일 기준)
  - 개인발표회 1회 또는 단체발표회 3회
- 최근 3년간(2015~2017년)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 전문예술단체

※ 공통사항 : 상업성이 없는 비영리 순수 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

※ 학위청구, 졸업전시 제외

지원항목

- 전시 기획 및 구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

지원유형

- 전문예술창작지원 A형 : 연례, 정기적인 사업으로 소액다건형 지원/ 매년 지원
- 전문예술창작지원 B형 : 창작 기획 사업으로 집중지원(선택과 집중)/ 5년간 1회 지원

지원대상사업

- 2018.12.31.까지 발표하는 개인전/ 기획전/ 단체전
- 기획자가 진행하는 1인 작가의 전시는 기획전으로 "B형"으로 지원 신청 가능

※ 전시 없는 심포지엄•교육프로그램•세미나 등은 지원 신청할 수 없음.

지원유형 및 지원금 범위

<table>
<tr><th colspan="3">구분</th><th>세부분야</th><th>지원금 범위</th></tr>
<tr><td rowspan="4">A형</td><td colspan="2">개인</td><td>한국화, 서양화, 서예, 판화, 설치, 사진, 공예, 건축, 기획, 디자인, 조소, 도예, 기타</td><td>300만원~500만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단체</td><td>소그룹 집단</td><td rowspan="2">한국화, 서양화, 서예, 판화, 설치, 사진, 공예, 건축, 기획, 디자인, 조소, 도예, 행사, 기타</td><td>500만원~1,000만원</td></tr>
<tr><td>직능단체</td><td>1,000만원~2,000만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B형</td><td colspan="2">개인</td><td>한국화, 서양화, 서예, 판화, 설치, 사진, 공예, 건축, 기획, 디자인, 조소, 도예, 기타</td><td>500만원~1,500만원</td></tr>
<tr><td>단체</td><td>소그룹 집단</td><td>한국화, 서양화, 서예, 판화, 설치, 사진, 공예, 건축, 기획, 디자인, 조소, 도예, 행사, 기타</td><td>1,000만원~3,000만원</td></tr>
</table>

1. 전문예술창작지원

2) 시각예술 분야

심의절차

1차 행정심의		2차 서류심의		3차 인터뷰심의(공개)		4차 심층심의
재단		전문가		전문가		전문가
• 신청자격 확인 • 전년도 사업평가		•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심사		• 심의기준에 따른 인터뷰 심사		• 심의기준에 따른 토론심사
A형(연례, 정기사업)	▶	A형(연례, 정기사업)	▶			A형(연례, 정기사업)
B형(창작기획사업)	▶	B형(창작기획사업)	▶	B형(창작기획사업)	▶	B형(창작기획사업)

심의기준

- 사업의 적정성/ 타당성(20%)
- 사업의 예술성(30%)
- 사업수행능력(30%)
- 사업의 성과/ 기여도(20%)

제출서류

구분		제출서류 내용
개인	필수	① 지원신청서 - 국가문화예술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 ② 세부사업계획서(지정서식) (HWP 형식으로 제출, PDF 변환 불가) ③ 포트폴리오(지정 서식) (PPT형식으로 제출, PDF 변환 불가) ④ 최근 3년간 문화예술 활동 경력 증빙 자료 (HWP, PDF, PPT 파일 형식으로 하나의 파일로 제출)
	선택	대관신청서
	※ ②~④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작성 시 첨부(총 용량 100MB 이하), 별도 제출 불가	
단체	필수	① 지원신청서 (국가문화예술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) ② 최근 3년간 신청단체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 경력 증빙 자료 - 언론, 전문지 등의 보도내용, 행사 사진 자료 등 - 단체 성격을 알 수 있는 각종 법적증빙서 ③ 단체에서 발간한 화보(도록) (우편 제출)

1. 전문예술창작지원

2) 시각예술 분야

신청서 제출방법

- 신청기간 A형 : 2018년 2월 5일(월) ~ 2018년 2월 26일(월) 18:00
  B형 : 2018년 1월 8일(월) ~ 2018년 1월 29일(월) 18:00
-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지원 신청
  - 전자 우편,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.
 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에 단체 명의로 회원가입 후,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.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.
 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'내정보방'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.

의무사항

- 선정된 예술인/ 예술단체는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교부 신청 전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'제주인놀다'에 반드시 지원사업 홍보물을 게시하여야 합니다.
- 선정사업 관련 홍보물 및 발간물에는 반드시 '문화체육관광부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'의 후원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.
- 선정된 예술인/ 예술단체는 추후 사업 수행시 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, 관객만족도조사,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※ 의무사항 미이행시, 추후 재단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- 예술창작팀 064-800-9152~7

1. 전문예술창작지원

3) 공연예술 분야

지원내용

- 공연예술(연극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) 분야 창작·발표 지원

신청자격

- 최근 3년간(2015~2017년)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(거주) 예술인 (공고일 기준)
  - 개인발표회 1회 또는 단체 발표회 3회
- 최근 3년간(2015~2017년)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 전문예술단체

※ 공통사항 : 상업성이 없는 비영리 순수 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

※ 학위청구, 졸업발표회 제외

지원항목

- 연극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 등 공연예술분야의 행사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일부 지원

지원유형

- 전문예술창작지원 A형 : 연례, 정기적인 사업으로 소액다건형 지원/ 매년 지원
- 전문예술창작지원 B형 : 창작 기획 사업으로 집중지원(선택과 집중)/ 5년간 1회 지원

지원대상사업

- 2018.12.31.까지 발표하는 사업
- 지원 장르

① 연극 : 창작극, 번역극, 뮤지컬, 넌버벌, 마임, 아동극, 인형극, 기타

② 무용 : 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레, 창작무용극, 기타

③ 음악 : 성악, 합창, 오페라, 관현악, 실내악, 기악, 작곡, 대중음악, 기타

④ 전통예술 : 전통연희, 국악, 전통무용, 전통민속, 창작국악, 기타

지원유형 및 지원금 범위

구분			세부분야	지원금 범위
A형	개인		독무, 독창, 독주, 작곡, 기타	300만원~500만원
	단체	소그룹 집단	창작극, 번역극, 뮤지컬, 넌버벌, 마임, 아동극, 인형극, 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레, 창작무용극 성악, 합창, 오페라, 관현악, 실내악, 기악, 작곡, 대중음악, 기타	500만원~1,000만원
		직능단체		1,000만원~2,000만원
B형	개인		독무, 독창, 독주, 작곡, 기타	500만원~1,500만원
	단체	소그룹 집단	창작극, 번역극, 뮤지컬, 넌버벌, 마임, 아동극, 인형극, 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레, 창작무용극 성악, 합창, 오페라, 관현악, 실내악, 기악, 작곡, 대중음악, 기타	1,000만원~5,000만원

1. 전문예술창작지원

3) 공연예술 분야

심의절차

1차 행정심의	2차 서류심의	3차 인터뷰심의(공개)	4차 심층심의
재단	전문가	전문가	전문가
• 신청자격 확인 • 전년도 사업평가	•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심사	• 심의기준에 따른 인터뷰 심사	• 심의기준에 따른 토론심사
A형(연례, 정기사업)	A형(연례, 정기사업)		A형(연례, 정기사업)
B형(창작기획사업)	B형(창작기획사업)	B형(창작기획사업)	B형(창작기획사업)

심의기준

- 사업의 적정성/ 타당성(20%)
- 사업의 예술성(30%)
- 사업수행능력(30%)
- 사업의 성과/ 기여도(20%)

제출서류

구분		제출서류 내용
개인/단체	필수	① 지원신청서 - 국가문화예술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 ② 세부사업계획서(지정서식) (HWP 형식으로 제출, PDF 변환 불가) ③ 최근 3년간 문화예술 활동 경력 증빙 자료 - HWP, PDF, PPT 파일 형식으로 하나의 파일로 제출 - 동영상 : AVI, WMV 파일 형식으로 3분 이내 ④ 단체 성격을 알 수 있는 각종 법정증빙서
	선택	① 지원신청 장르별 추가 제출서류(해당사항이 있을 경우) ☜ ***"B형" 지원사업*** - 연극 : 공연대본(희곡) (PDF 파일) - 음악 : 악보(PDF 파일) *창작초연작품이 있는 경우에 한함. - 전통예술 : 악보 또는 대본(PDF 파일) - 연희 : 대본 - 국악기악, 국악성악, 작곡발표 : 악보
	※ ②~④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작성 시 첨부(총 용량 100MB 이하), 별도 제출 불가	

1. 전문예술창작지원

3) 공연예술 분야

신청서 제출방법

- 신청기간 A형 : 2018년 2월 5일(월) ~ 2018년 2월 26일(월) 18:00
  B형 : 2018년 1월 8일(월) ~ 2018년 1월 29일(월) 18:00
-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지원 신청
  - 전자 우편,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.
 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에 단체 명의로 회원가입 후,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.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.
 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'내정보방'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.

의무사항

- 선정된 예술인/ 예술단체는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교부 신청 전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'제주인놀다'에 반드시 지원사업 홍보물을 게시하여야 합니다.
- 선정사업 관련 홍보물 및 발간물에는 반드시 '문화체육관광부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'의 후원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.
- 선정된 예술인/ 예술단체는 추후 사업 수행시 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, 관객만족도조사,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※ 의무사항 미이행시, 추후 재단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- 예술창작팀 064-800-9152~7

1. 전문예술창작지원

4) 다원예술 분야

지원내용

- 기존의 예술 장르에 속하지 않는 탈장르·복합장르, 비주류 및 독립예술 창작 지원

신청자격

- 최근 3년간(2015~2017년)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(거주) 예술인 (공고일 기준)
  - 개인발표회 1회 또는 단체발표회 3회
- 최근 3년간(2015~2017년)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 전문예술단체

※ 공통사항 : 상업성이 없는 비영리 순수 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

지원항목

- 다원예술 분야의 행사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일부 지원

지원유형

- 전문예술창작지원 A형 : 연례, 정기적인 사업으로 소액다건형 지원/ 매년 지원
- 전문예술창작지원 B형 : 창작 기획 사업으로 집중지원(선택과 집중)/ 5년간 1회 지원

지원대상사업

- 2018.12.31.까지 발표하는 사업
  - 탈장르예술,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는 실험적 예술
  - 여러 장르의 특성이 융합된 복합장르 예술
  - 예술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예술 활동

지원유형 및 지원금 범위

구분			세부분야	지원금 범위
A형	개인		융복합형, 실험, 복합, 대중, 기타	300만원~500만원
	단체	소그룹 집단	융복합형, 실험, 복합, 대중, 기타	500만원~1,000만원
		직능단체		1,000만원~2,000만원
B형	개인		융복합형, 실험, 복합, 대중, 기타	500만원~1,500만원
	단체	소그룹 집단	융복합형, 실험, 복합, 대중, 기타	1,000만원~5,000만원

1. 전문예술창작지원

4) 다원예술 분야

심의절차

1차 행정심의	2차 서류심의	3차 인터뷰심의(공개)	4차 심층심의
재단	전문가	전문가	전문가
• 신청자격 확인 • 전년도 사업평가	•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심사	• 심의기준에 따른 인터뷰 심사	• 심의기준에 따른 토론심사
A형(연례, 정기사업)	A형(연례, 정기사업)		A형(연례, 정기사업)
B형(창작기획사업)	B형(창작기획사업)	B형(창작기획사업)	B형(창작기획사업)

심의기준

- 사업의 적정성/ 타당성(20%)
- 사업의 예술성(30%)
- 사업수행능력(30%)
- 사업의 성과/ 기여도(20%)

제출서류

구분		제출서류 내용
개인/ 단체	필수	① 지원신청서(국가문화예술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) ② 세부사업계획서(지정서식) (HWP 형식으로 제출, PDF 변환 불가) ③ 최근 3년간 문화예술 활동 경력 증빙 자료 - HWP, PDF, PPT 파일 형식으로 하나의 파일로 제출 - 동영상 : AVI, WMV 파일 형식으로 3분 이내 - 음원 : MP3, WAV 파일 형식 ④ 단체 성격을 알 수 있는 각종 법적 증빙서
	※ ②~④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작성 시 첨부(총 용량 100MB 이하), 별도 제출 불가	

신청서 제출방법

- 신청기간 A형 : 2018년 2월 5일(월) ~ 2018년 2월 26일(월) 18:00
  B형 : 2018년 1월 8일(월) ~ 2018년 1월 29일(월) 18:00
-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지원 신청
  - 전자 우편,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.
 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에 단체 명의로 회원가입 후,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.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.
 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'내정보방'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.

1. 전문예술창작지원

4) 다원예술 분야

의무사항

- 선정된 예술인/ 예술단체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교부 신청 전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'제주인놀다'에 반드시 지원사업 홍보물을 게시하여야 합니다.
- 선정사업 관련 홍보물 및 발간물에는 반드시 '문화체육관광부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'의 후원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.
- 선정된 예술인/ 예술단체는 추후 사업 수행시 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, 관객만족도조사,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※ 의무사항 미이행시, 추후 재단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- 예술창작팀 064-800-9152~7

2. 최초예술지원

지원목적

- 사회 초년 예술가의 데뷔 및 창작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계로의 진입과 성장을 도움.

지원내용

- 창작 발표 지원

신청자격

- 공공 지원금 수혜 경력이 없는 제주 청년 예술인 중 만 24세 부터 만 34세 예술인 (1984.1.1.~1994.12.31.)

※ 공통사항 : 상업성이 없는 비영리 순수 예술 활동을 하는 개인

지원항목

- 창작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

지원대상사업

- 2018.12.31.까지 창작 작품 발표가 가능한 사업
  - 문학, 시각예술, 공연예술, 다원예술 전 장르 가능

지원금 범위

1건당 300백만 원(정액 지원)

심의절차

1차 행정심의	▶	**2차** 서류심의	▶	**3차** 심층심의
재단		전문가		전문가
• 신청자격 확인 • 전년도 사업평가		•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심사		• 심의기준에 따른 토론심사

심의기준

- 사업의 적정성/ 타당성(20%)
- 사업의 예술성(30%)
- 사업수행능력(30%)
- 사업의 성과/ 기여도(20%)

제출서류

<필수>

- 지원신청서 (국가문화예술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)
- 세부사업계획(지정서식) (HWP 형식으로 제출, PDF 변환 불가)

2. 최초예술지원

신청서 제출방법

- 신청기간 2018년 2월 5일(월) ~ 2018년 2월 26일(월) 18:00
-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지원 신청
  - 전자 우편,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.
 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에 단체 명의로 회원가입 후,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.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.
 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'내정보방'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.

의무사항

- 선정된 예술인/ 예술단체는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교부 신청 전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'제주인놀다'에 반드시 지원사업 홍보물을 게시하여야 합니다.
- 선정사업 관련 홍보물 및 발간물에는 반드시 '문화체육관광부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'의 후원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.
- 선정된 예술인/ 예술단체는 추후 사업 수행시 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, 관객만족도조사,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※ 의무사항 미이행시, 추후 재단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- 예술창작팀 064-800-9152~7

3. 원로예술가지원

지원목적

-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에 매진한 원로예술가의 작품세계를 정립하여 재조명

지원내용

- 회고전+아카이브

지원대상자

- 제주 출신의 70세 이상(1948.12.31. 이전) 원로예술인 중 지역에서 30년 이상의 예술 활동 경력이 있는 예술가

추진절차

추천 ▶	실적 자료 조사 및 정리 ▶	선정 심사 ▶	사업 수행
• 단체 추천 • 10명 이상 예술가 추천	• 추천자 또는 기획자	• 심의기준에 따른 서류 및 토론 심사	• 회고전 • 아카이브

지원항목

- 회고전 기획 및 구현에 소요되는 비용
- 아카이브 결과물 발간에 소요되는 비용
- 기획자 인건비 및 비평가 사례비 지원(추후 재단과 협의)

지원금 범위

- 1개 선정된 사업당 최대 3,000만원 이내

심의절차

1차 행정심의 ▶	**2차** 서류심의 ▶	**3차** 심층심의
재단	전문가	전문가
• 신청자격 확인	•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심사	• 심의기준에 따른 토론심사

심의기준

- 사업의 적정성/ 타당성(20%)
- 사업의 예술성(30%)
- 사업수행능력(30%)
- 사업의 성과/ 기여도(20%)

3. 원로예술가지원

제출서류

<필수>

- 지원신청서 (국가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)
- 세부사업계획서(지정서식) (HWP 형식으로 제출, PDF 변환 불가)
- 원로예술가 활동 경력 증빙 자료 (HWP, PDF, PPT 파일 형식으로 하나의 파일로 제출)

신청서 제출방법

- 신청기간 별도 공모 예정
-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지원 신청
  - 전자 우편,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.
 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에 단체 명의로 회원가입 후,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.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.
 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'내정보방'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.

의무사항

- 선정된 예술인/ 예술단체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교부 신청 전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'제주인놀다'에 반드시 지원사업 홍보물을 게시하여야 합니다.
- 선정사업 관련 홍보물 및 발간물에는 반드시 '문화체육관광부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'의 후원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.
- 선정된 예술인/ 예술단체는 추후 사업 수행시 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, 관객만족도조사,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※ 의무사항 미이행시, 추후 재단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- 예술창작팀 064-800-9152~7

4. 문화예술연구 및 평론 지원

지원목적

- 지역 문화예술 자료의 기록, 보존, 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문화예술 자원 발굴 및 지역 예술의 정체성 확립
- 시각, 공연예술 분야 비평 활성화 등 예술의 학술적 토대 강화

신청자격

- 지역 문화예술 연구, 평론 전문 간행물을 발간해오고 있는 단체
- 지속적으로 평론활동을 하고 있는 평론가 개인 및 단체
- 평론서를 출판하고 있는 제주 소재 출판사

지원항목

- 조사 연구집 및 평론집 출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
  - 연구비는 총사업비의 50% 이내, 인쇄출판비 지원
- 학술행사 운영 등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

지원대상사업

- 2018.12.31.까지 완료 가능한 다음의 사업
- 문화예술분야 조사 연구 및 출간 지원
- 예술분야 비평을 주제로 하는 출판지원, 간행물 지원, 학술행사 등의 비평 활동 지원

※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

– 비평전문지가 아닌 일반적인 잡지 발간

– 각 분야별 일반 연구와 관련한 학회지 발간

– 일반적인 예술이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례 학술 행사

지원금 범위

- 최저 500만원 ~ 최고 2,000만원

심의절차

1차 행정심의	▶	**2차** 서류심의	▶	**3차** 심층심의
재단		전문가		전문가
• 신청자격 확인		•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심사		• 심의기준에 따른 토론심사

심의기준

- 사업의 적정성/ 타당성(20%)
- 사업의 우수성 및 지역성 반영 정도(40%)
- 사업수행능력(20%)
- 사업의 성과/ 기여도(20%)

4. 문화예술연구 및 평론 지원

제출서류

구분		제출서류 내용
개인/단체	필수	① 지원신청서(국가문화예술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) ② 세부사업계획서(지정서식) (HWP 형식으로 제출, PDF 변환 불가) ③ 해당 활동 경력 증빙 자료 - HWP, PDF, PPT 파일 형식으로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④ 단체 성격을 알 수 있는 각종 법적 증빙서
	※ ②~④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작성 시 첨부(총 용량 100MB 이하), 별도 제출 불가	

신청서 제출방법

- 신청기간 2018년 1월 8일(월) ~ 2018년 1월 29일(월) 18:00
-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지원 신청

- 전자 우편,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.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에 단체 명의로 회원가입 후,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.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.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'내정보방'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.

의무사항

- 선정된 예술인/ 예술단체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사업 완료 후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'제주인놀다'에 반드시 지원사업 홍보물을 게시하여야 합니다.
- 선정사업 관련 홍보물 및 발간물에는 반드시 '문화체육관광부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'의 후원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.
- 선정된 예술인/ 예술단체는 추후 사업 수행시 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, 관객만족도조사,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※ 의무사항 미이행시, 추후 재단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- 예술창작팀 064-800-9152~7

5. 국제예술교류지원

지원목적

-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하는 민간 차원의 예술 교류 활동 지원
- 제주 예술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, 국제 경쟁력 고취

신청자격

- 최근 3년간(2015~2017년)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(거주) 예술인
  - 개인발표회 1회 또는 단체발표회 3회
- 최근 3년간(2015~2017년)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 전문예술단체

※ 공통사항 : 상업성이 없는 비영리 순수 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

지원항목

- 국제교류활동에 소요되는 예술 활동 관련 직접 경비(항공료, 체재비 등)

지원대상사업

- 2018년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은 국제예술교류사업
  - 해외기관, 단체 등과의 공동 제작 및 발표 : 해외 기획자, 연출가, 안무가, 작곡가 등과 협력/공동 제작하는 사업
  -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예술교류사업의 참가 활동 : 공연, 전시, 세미나, 워크숍, 레지던시 프로그램, 세계 유명 비엔날레·페스티벌 참여 등

※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

– 친목 성격의 초청성 교류행사, 단순 초청으로 구성된 형식적 교류활동, 해외 교민 대상 위문 공연 형태의 사업 등

지원금 범위

- 최저 500만원 ~ 2,000만원

심의절차

1차 행정심의	▶	2차 서류심의	▶	3차 인터뷰심의(공개)	▶	4차 심층심의
재단		전문가		전문가		전문가
• 신청자격 확인 • 전년도 사업평가		•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심사		• 심의기준에 따른 인터뷰 심사		• 심의기준에 따른 토론심사

심의기준

- 사업의 적정성/ 타당성(20%)
- 사업의 예술성(30%)
- 사업수행능력(30%)
- 사업의 성과/ 기여도(20%)

5. 국제예술교류지원

제출서류

구분		제출서류 내용
개인/단체	필수	① 지원신청서(국가문화예술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) ② 사업 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) 초청장, 공동사업 추진 계약서, 초청승낙서, 계약서 등 ③ 최근 3년간 문화예술 활동 경력 증빙 자료 - HWP, PDF, PPT 파일 형식으로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④ 단체 성격을 알 수 있는 각종 법적 증빙서
	※ ②~④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작성 시 첨부(총 용량 100MB 이하), 별도 제출 불가	

신청서 제출방법

- 신청기간 2018년 1월 8일(월) ~ 2018년 1월 29일(월) 18:00
-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지원 신청

- 전자 우편,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.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에 단체 명의로 회원가입 후,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.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.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'내정보방'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.

의무사항

- 선정된 예술인/ 예술단체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교부 신청 전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'제주인놀다'에 반드시 지원사업 홍보물을 게시하여야 합니다.
- 선정사업 관련 홍보물 및 발간물에는 반드시 '문화체육관광부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'의 후원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.
- 선정된 예술인/ 예술단체는 추후 사업 수행시 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, 관객만족도조사,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※ 의무사항 미이행시, 추후 재단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- 예술창작팀 064-800-9152~7

6. 창작공간 프로그램 지원

지원목적

- 창작공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창작의욕 고취 및 예술교류 활동 확대
- 지역 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
- 창작공간을 활용한 제주형 대안공간 사업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 활성화

신청자격

- 최근 3년간(2015~2017년)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 창작 공간 운영단체 (공고일 기준)
- 반드시 기획자 1인을 확보

지원항목

- 기획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20% 이내, 공간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10% 이내에서 지원
- 입주 예술가의 작품 제작 및 발표
- 레지던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주예술가 개인의 창작 활동을 위해 필요시 월30만원(아티스트피) 범위에서 개별 예술가 지원
- 국내외 교류, 지역 주민 연계 커뮤니티 활동 등 창작공간 프로그램 운영의 직접 경비 중 일부

※ 지원할 수 없는 항목

- 창작공간의 구입, 임대, 신축 및 개보수 경비
- 고정자산 취득 및 경직성 경비
- 기타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, 관련 법령•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

지원대상사업

- 2018.12.31. 완료되는 창작공간 프로그램 지원사업

- 문학, 시각예술, 공연예술, 다원예술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 목적이 뚜렷하고, 장르별, 공간별, 프로젝트별 특성이 분명한 창작공간 프로그램
- 지역공동체, 예술가, 기획자 등 다양한 영역과의 교류 및 협업에 의해 창작공간을 만드는 대안공간사업
- 입주작가의 창작활동과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추진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

지원금 범위

- 최저 2,000만원 ~ 5,000만원

심의절차

1차 행정심의	▶	**2차** 서류심의	▶	**3차** 인터뷰심의(공개)	▶	**4차** 심층심의
재단		전문가		전문가		전문가
• 신청자격 확인 • 전년도 사업평가		•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심사		• 심의기준에 따른 인터뷰 심사		• 심의기준에 따른 토론심사

6. 창작공간 프로그램 지원

심의기준

- 사업의 적정성/ 타당성(20%)
- 사업의 예술성(30%)
- 사업수행능력(30%)
- 사업의 성과/ 기여도(20%)

제출서류

구분		제출서류 내용
단체	필수	① 지원신청서(국가문화예술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) ② 세부사업계획서(지정서식) (HWP 형식으로 제출, PDF 변환 불가) ③ 최근 3년간 문화예술 활동 경력 증빙 자료 - HWP, PDF, PPT 파일 형식으로 하나의 파일로 제출 - 동영상 : AVI, WMV 파일 형식으로 3분 이내 - 음원 : MP3, WAV 파일 형식 ④ 단체 성격을 알 수 있는 각종 법적 증빙서
	선택	• PT 자료
	※ ②~④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작성 시 첨부(총 용량 100MB 이하), 별도 제출 불가	

신청서 제출방법

- 신청기간 2018년 1월 8일(월) ~ 2018년 1월 29일(월) 18:00
-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지원 신청

- 전자 우편,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.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에 단체 명의로 회원가입 후,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.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.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'내정보방'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.

의무사항

- 선정된 예술인/ 예술단체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교부 신청 전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'제주인놀다'에 반드시 지원사업 홍보물을 게시하여야 합니다.
- 선정사업 관련 홍보물 및 발간물에는 반드시 '문화체육관광부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'의 후원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.
- 선정된 예술인/ 예술단체는 추후 사업 수행시 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, 관객만족도조사,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※ 의무사항 미이행시, 추후 재단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- 예술창작팀 064-800-9152~7

7. 대안문화공간지원

지원목적	• 예술가의 작품 발표 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
신청자격	• 일상 속 갤러리 카페, 독립서점, 북카페 등의 다중 대안 공간
지원항목	• 소규모 전시, 공연, 프로그램 진행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 지원 • 참여 예술인 사례비 지원
지원대상사업	• 문화예술의 문턱을 낮추는 공간으로 예술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매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
지원금 범위	• 최저 200만원 ~ 최고 500만원
심의절차	• 3월 별도 공지 예정
심의기준	• 3월 별도 공지 예정
제출서류	• 3월 별도 공지 예정
신청서 제출방법	• 신청기간 "3월 중 별도 공모" •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지원 신청 - 전자 우편,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.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에 단체 명의로 회원가입 후,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.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.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'내정보방'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.

7. 대안문화공간지원

의무사항

- 선정된 예술인/ 예술단체 등는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교부 신청 전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'제주인놀다'에 반드시 지원사업 홍보물을 게시하여야 합니다.
- 선정사업 관련 홍보물 및 발간물에는 반드시 '문화체육관광부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'의 후원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.
- 선정된 예술인/ 예술단체는 추후 사업 수행시 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, 관객만족도조사,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※ 의무사항 미이행시, 추후 재단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- 예술창작팀 064-800-9152~7

8.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

지원목적

-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상주단체에게는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과 공연장 가동률 제고를 목적으로 함.
- 전문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와 우수작품 제작, 발표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에게 우수 공연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

지원내용

- 공공 공연장과 전문공연예술단체의 상주 및 협력사업 지원

공연장 역할	상주단체 역할
• 협약 공연단체에 사무실, 연습실 등 상주 공간 무상 제공(제공시설 내역 명기) • 협약 공연단체의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사용 우선권 부여 •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 주체적으로 수행(작품 기획 및 제작, 홍보 마케팅, 퍼블릭프로그램 운영, 성과관리 등) • 협약 공연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력 •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•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(상주단체페스티벌 포함) 시, 타 공연 단체에게도 협약단체와 동일한 혜택 부여(대관료, 연습실, 사용료 등 면제 및 편의 제공) • 보조금 정산(세부내역 정산 협조)	• 우수작품 창작(창작 초연 작품 및 우수 레퍼토리) 개발 노력 • 선택 프로그램(역량강화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) 실시 •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하여 공연장과 적극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 • 공연장 상주 단체 간 교류 공연 시, 타 공연단체에 대해 적극 협력(홍보 마케팅 등) •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• 보조금 정산 총괄

신청자격

- **2018년부터 지원신청자격이 공연장 → 공연단체로 변경**
- 공연예술단체 : 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이 있는 전문공연예술단체
  - 제주도에 소재하거나 제주도를 거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전문공연예술단체

분야	지원대상 단체
연극	연극분야(아동, 청소년극, 뮤지컬 포함) 전문극단
무용	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레 등 전문 무용단
음악	실내악단, 교향악단, 합창단, 중창단, 오페라단 등 창작·연주 전문단체
전통예술	음악, 무용, 연희 등 전통예술창작·공연전문단체

- 공연장 : 제주도 내 공공 공연장(공연장등록증 필수 제출)
- 지원조건
  -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 간 상주단체로 매칭하고 협약
  - 상주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고 상주단체를 운영하는 공연장에 한함(민간 공연장 배제)

사무실	별도 공간 제공 필수, 책상 및 컴퓨터 기본 설치, 안내판 부착 등
연습실	공동 사용 연습실도 인정하며, 별도 연습실이 없을 경우 공연장을 연습공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

  - 상주단체의 공연장 무료 사용(제반 부대비용 포함)을 필수로 함(유료 대관 공연장 배제).

8.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

지원항목

-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
-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필수 경비는 보조금의 30% 이내 집행 가능
- 상주 공연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20% 범위 내에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공연장이 필요로 하는 경비(프로그램 운영, 작품제작, 홍보·마케팅, 상주공간 운영, 사업 운영 인건비 등)로 집행 가능

지원규모

- 상주단체 당 최소 8천만 원 ~ 최고 2억 원 이내
- 공연장 당 상주단체이 수는 장르를 안배하여 최대 3개 이내로 제한
- 지원규모는 공연장에 상주하는 단체의 수, 신청사업의 특성(장르), 사업계획(내용, 규모, 소요예산 등), 예술적 성과, 공연장-단체 협력도,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

수행 프로그램 (의무)

- 필수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 구분 수행

구분		내용	비고
필수	신작공연	• 초연 창작품 개발 공연	
	레퍼토리	• 기존 우수작품 레퍼토리 공연	
선택	퍼블릭 프로그램	• 교육, 문화나눔 등 관객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	택1 이상
	교류·협력 프로그램	• 지역내 상주단체 간 교류, 타 지역 단체와 교류	
	역량강화 프로그램	• 상주단체 단원의 예술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• 공연장 및 상주단체 관계자(기획, 홍보, 마케팅, 회계 등)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	

심의절차

1차 행정심의	▶	**2차** 서류심의	▶	**3차** 인터뷰심의(공개)	▶	**4차** 심층심의
재단		전문가		전문가		전문가
• 신청자격 확인 • 전년도 사업평가		•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심사		• 심의기준에 따른 인터뷰 심사		• 심의기준에 따른 토론심사

8.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

심의기준

< 상주단체 >

구분	심의기준(가중치)	세부평가내용
상주단체 (60%)	공연장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(25)	▸ 프로그램의 우수성 -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독창성, 차별성, 완성도 - 단체의 역량으로 예측 가능한 예술적 완성도 - 해당분야에 미칠 파급효과, 예상 기여도 ▸ 실현 가능성 - 공연장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여부 - 공연장의 계획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여부
	협력 의지 및 노력도 (15)	▸ 공연장과 매칭 현황 - 공연장과 상주 협약 체결 여부 - 공연장에서 희망하는 조건 충족 여부
	창작역량 및 활동실적 (10)	▸ 최근 3년간 공연 및 수상실적 - 창작활동 실적 및 레퍼토리 구축 실적 - 각종 대회 및 예술제 참가, 수상실적 - 각 기관별 지원금 수혜 내역 및 사업 수행실적 - 관객개발 성과 ▸ 단체에 대한 외부평가 - 언론 및 예술전문지 공연평 등
	조직역량 (10)	▸ 조직운영 역량 - 전문예술법인(단체) 지정 또는 사회적 기업 여부 - 보유 인력(예술가, 행정가 등) 및 협력 인력 현황 - 단체의 조직운영 및 경영상태

< 공연장 >

구분	심의기준(가중치)	세부평가내용
공연장 (40%)	상주단체와 협력 프로그램운영계획 (10)	▸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절성 - 공연장 여건 및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 여부 - 관객개발 프로그램 계획의 적절성 ▸ 프로그램 실현가능성 - 예산 및 자원 확보 여부 - 기타 유사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 ▸ 공연장 가동률 제고 계획 - 연간 가동률 향상 계획(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)
	협약단체 지원계획 (10)	▸ 상주여건 제공 - 상주단체에 공간(사무실, 연습실 등) 무료제공 여부 - 상주단체에 공연장 무료대관 여부 ▸ 상주단체와 적극적 협력 여부 - 상주단체와의 협업 의지와 노력의 정도
	기획 및 홍보 마케팅 역량 (10)	▸ 인적 역량 -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- 홍보·마케팅·기획 인력 보유현황 및 계획 ▸ 신청 주체의 활동실적 : 기획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·마케팅 실적
	시설 및 운영 역량 (10)	▸ 시설 및 운영현황 - 객석규모, 무대시설 현황, 부대시설 등 - 가동률, 객석 점유율, 기획프로그램 제작비율 등 ▸ 인력현황 - 무대시설 및 전문기술인력 보유 현황

8.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

제출서류

구분		제출서류 내용
필수	공연단체	① 지원신청서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작성 ② 상주단체 운영계획(예술단체가 작성) ③ 단체 활동 실적자료(팸플릿, 보도자료, 포스터 등) ④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
	공연장	① 공연장 등록증 ② 협약서(계약서, 양해각서 등) ③ 상주단체 운영계획(공연장이 작성)
선택		※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(해당사항이 있을 경우)

※ 공통사항

① 필수 제출서류에 누락이 있을 경우 행정심사에서 탈락

② 지원신청내용 및 제출된 서류 내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.

③ 신청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자료는 선정자 발표 후, 선정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하며, 증빙서류 불충분 및 자격요건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.

④ 활동계획서 상 사업장소(규모) 및 사업기간 등 계획 대비 선정 이후 변경 시, 지원금 삭감 혹은 취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하기 바람.

신청서 제출방법

- 신청기간 2018년 1월 8일(월) ~ 2018년 1월 29일(월) 18:00
-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지원 신청
  - 전자 우편,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.
 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에 단체 명의로 회원가입 후,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.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.
 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'내정보방'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.

의무사항

- 선정된 예술단체 등는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교부 신청 전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'제주인놀다'에 반드시 지원사업 홍보물을 게시하여야 합니다.
- 선정사업 관련 홍보물 및 발간물에는 반드시 '문화체육관광부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'의 후원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.
- 선정된 예술인/ 예술단체는 추후 사업 수행시 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, 관객만족도조사,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※ 의무사항 미이행시, 추후 재단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- 예술창작팀 064-800-9154